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 법인 - 감사보고서 첨부용, 대외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을 첨부합니다.

1. 감사대상업무

회 사 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사대상 회사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주권상장법인/ 코넥스시장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 기타비상장주식회사/ 유한회사

2.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 '중요성'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전반적인 감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적용한 중요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¹⁾	전기 ²⁾	판단근거 ³⁾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수행 중요성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			

- 주: 1) ① 중요성 기준이 감사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 최종 중요성 금액을 기재
 ②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은 유형별로 각각의 중요성 기재
- 2) ① 「중요성 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기)의 직전 사업연도(전기) 해당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수정 내용과 사유를 설명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 전기 중요성은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있는 수치를 기재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힘
- 3) ① 중요성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활용된 벤치마크(예: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매출액, 자산총액 등), 적용된 비율, 기타 고려사항 등을 기재
 ② 회사가 특정 벤치마크를 선택한 구체적 사유, 특정 비율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를 기재
 ③ 당기와 전기의 중요성 산출을 위한 벤치마크, 적용된 비율 등이 다른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전기 · 당기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는 감사인이 변경된 사실을 기재

3. 보고자

담당사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